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였고, 면허를 할 때 1회만 면허세를 과세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서 면허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법 제165조에서는 신규면허 및 변경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신고납부제도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개정전에도 신규면허와 변경면허의 경우 면허세의 납세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상의 규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부과하는 면허세는 종전과 같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면허세 납세지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로,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법 제167조에서는 면허세 납부후 면허신청 철회 등에 따라 면허세를 환부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이자는 환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영 제126조의2에서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점용하는 하천·공유수면의 점용의 경우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중인 면허 및 1년이상 휴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1년이상 휴업으로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제3항에 의거 면허부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별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중 일부를 개정하여 도로·하천·공원 등의 50m<sup>2</sup> 이하 점용허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소방공사설비공사업(제3종),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원양어업, 연안어업(제1종~제4종),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소분·판매업중 식품자동판매기업,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제1종~제4종), 지적법에 의한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제4종) 등의 면허를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 9) 주민세 소득세할 과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법제172조)

소득세할주민세액을 확정신고한 후 확정신고세액을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에